

신나고 재미있는 법이다!



S.C.P (Y.M.Jeon)



형사소송법

1. 형사소송법

[시행 2018, 1, 7,] [법률 제13720호, 2016,

□ 본문

- □ 제1편 총칙
- 田 제1장 법원의 관할
- 田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, 기피, 회피
- 田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
- 田 제4장 변호
- 田 제5장 재판
- 田 제6장 서류
- 田 제7장 송달
- 田 제8장 기간
- 田 제9장 피고인의 소환, 구속
- 田 제10장 압수와 수색
- 田 제11장 검증
- 田 제12장 증인신문
- 田 제13장 감정
- 田 제14장 통역과 번역
- 田 제15장 증거보전
- 田 제16장 소송비용
- 田 제2편 제1심
- 田 제3편 상소
- 田 제4편 특별소송절차
- 田 제5편 재판의 집행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제 1조 ~ 제 76조

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 1조 ~ 제 24조

통신비밀보호법 제 1조 ~ 제 18조

신용정보법 제 1조 ~ 제 52조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제 1조 ~ 제 20조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조 ~ 제 39조



?

제 1조 ~ 제 493조

전자기록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범죄



제 141조 제 1항 (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)

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는 전자기록 (특수매체기록)을 손상 또는 은닉

7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제 227조 제 2항 (공전자기록 위작, 변작)

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(특수매체 기록)을 위작 또는 변작

10년 이하의 징역

제 232조 제 2항 (사전자기록 위작, 변작)

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,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(특수매체기록)을 위작 또는 변작

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전자기록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범죄



제 314조 제 2항 (컴퓨터 업무 방해죄)

컴퓨터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컴퓨터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

5년 이하의 징역 or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
제 323조 (권리 행사 방해)

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을 취거, 은 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

5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

제 366조 (전자기록 손괴죄)

타인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

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

내용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경우



제 140조 제 3항 (공무상 비밀 침해죄)

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

5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

제 316조 제 2항 (전자기록 비밀 침해죄)

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 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

3년 이하의 징역,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제 347조 제 2항(컴퓨터 사용 사기죄)

컴퓨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,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함

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정보통신망법 / 저작권법 / 신용정보법



제 74조 제 1항 제 3호 (스토킹, 사이버폭력)

정보통신망을 이용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
1년 이하의 징역 or 1백만원 이하의 벌금

제 104조의 3 제 1항 (친고죄)

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발, 은닉

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제 50조 제 2항

신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변경,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or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, 복제한 자

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QnA